

퇴직연금전용정기예금 특약 (금융기관용)

제 1 조 적용범위

『퇴직연금전용정기예금』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한다)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치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을 적용 한다.

제 2 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의 과목은 정기예금으로 한다.

제 3 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이다.

제 4 조 계약기간

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3 개월, 6 개월, 1 년, 2 년, 3 년, 5 년으로 한다.

제 5 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 원 이상으로 한다.

제 6 조 재예치

- ① 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, 만기 시에 분할인출원리금을 제외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최초계약기간단위로 자동 재예치한다.

최초 신규 시 자동 재예치를 신청한 경우에는, 동 예금의 만기도래 시마다 별도의 재예치 의사확인 절차 없이 자동 재예치 되며, 약정이율을 제외한 계약조건은 직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갱신된다.

이 예금의 만기일이 금융(법정)휴무일인 경우에는 해당일에 이은 첫 영업일을,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말일을 재예치일로 한다.

- ② 상기 ①항에도 불구하고, 거래처가 최초 신규 시 (또는 만기도래 시) 재예치 의사가 없음을 은행에 통지한 경우에는 이후 도래하는 만기시점에 재예치 되지 않는다.

제 7 조 이자

-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만기이자지급방식으로 만기일에 썸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.

- 예금금액 × 이율 × 일수 ÷ 365 (원 미만 절사)

- ② 이 예금의 이자는 신규일(또는 자동만기재예치일)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(또는 자동만기재예치일) 당시 영업점 및 은행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율로 썸한다.

제 8 조 분할인출

- ① 이 예금은 기간 중 만기를 포함하여 3 회 이내에서 분할인출이 가능하며 자동 만기 재예치된 경우에는 각 연장 기간 마다 만기를 포함하여 3 회 이내에서 분할인출이 가능하다.

단, 제 9 조 제 2 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시에는 횟수 제한 없이 분할인출이 가능하다.

-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 회 이내에서 분할인출이 가능하다.
-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인출의 경우에는 분할인출 횟수에서 제외한다.
- ④ 분할인출금액에 대한 이자는 제 9 조에 따라 지급한다.

제 9 조 중도해지

- ① 거래처가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한 때에는 신규일 또는 자동만기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신규일 또는 자동만기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.
-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에서 정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신규일 또는 최종 만기재예치일 당시 고시된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.
 - 1. 퇴직, 연금지급 등 급여 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 - 2.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
 - 가.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 - 나.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 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
 - 다. 그 밖에 천재·사변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
 - 3.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
 - 4.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
 - 5. 수탁자의 사임
 - 6.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
 - 7.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의 법정요건에 따른 특별중도인출의 경우
 - 8. 퇴직연금제도의 사업자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
 - 9. 수수료의 징수
- ③ 예금 만기이전의 특별중도해지시 적용되는 특별중도해지이율은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 이후의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.
 - 1. 계약기간이 3 월, 6 월, 1 년인 계약 : 신규 또는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고시이율
 - 2. 계약기간이 2 년, 3 년, 5 년인 계약
 - 가. 2 년 미만 예치시: 신규 또는 재예치 시점의 1 년제 퇴직연금전용정기예금 고시이율
 - 나. 2 년 이상 3 년 미만 예치 시: 신규 또는 재예치 시점의 2 년제 퇴직연금전용정기예금 고시이율
 - 다. 3 년 이상 예치 시: 신규 또는 재예치 시점의 3 년제 퇴직연금전용정기예금 고시이율

제 10 조 기 타

- ①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, 지급정지, 상계 등은 불가하다.
- ② 이 예금은 예금주와 은행간에 전문(電文)으로 거래하며, 통장은 발행되지 않는다.